
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-1008호

「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일원화(시행규칙 별표5의2 개정)함에 따라 표준임대료 할증 등에 관한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할증적용대상 및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비율 변경

나. 할증적용 대상중 자산기준 초과 관련 규정 변경(규칙 제13조제2항→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공공주택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
- 팩스 : 044-201-566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(044-201-4580, 044-201-45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